

##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7. 4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7. 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8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7. 12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옴부즈만 이강용)

가. 제안이유

○ 날로 다양하게 빈발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정추진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, 부천시시민옴부즈만과 덕망이 높은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순수민간 성격의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 조사에서 집단민원 중재·조정 역할을 추가 신설함(안 제2조 제2호)
- 시민옴부즈만의 조직 중 자문위원회를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로 명칭변경(안 제7조제5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옴부즈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의 한계 등으로 중재·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행정부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2차 해결 기능으로 중재·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다시 옴부즈만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되면 곤란할 것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구 달서구의 만원배심제 운영 상황을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함으로써 공정한 의견이 개진되어 합의점이 도출될 것입니다.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재·조정위원회 설치로 옴부즈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구시의 중재조정 역할과는 상이함. 대구배심원제는 조정을 수행하고, 부천시 집단민원 발생시 조정·중재역할로 대구시와 다르게 주관은 옴부즈만이 합니다.</li> </ul>

### 4. 토론요지

## 가. 찬성토론

- 집단민원 중재·조정역할을 추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임
- 집단민원을 공무원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한단계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므로 타당

## 나. 반대토론

-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충분히 역할 수행이 가능함. 별도 중재·조정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으며 음부즈만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밀접침합이 타당
- 집단민원이 접수되면 자문위원 외 심의하며 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가 법적인 검토 등 중재위원회 기능과 별로 다를 바 없음. 별도 신설할 필요가 없음

## 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## 6. 수정안 요지

- 별 첨

## 7. 소수의견요지

- "자문위원 구성은 대표 음부즈만이 정한다."를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**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**

의안번호	관련 제492호
의결년월일	2001. 7. 14 (제88회)

제안년월일 : 2001. 7. 12

제 안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제7조제5항 중 "자문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의"는 자문위원회에서 역할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함이 타당

## 2. 주요골자

- "자문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"를 현행과 같이 함(안 제7조제5항)

**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**

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5항중 "자문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의"를 "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자문위원회의"로 한

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시민옴부즈만 조직 등)</p> <p>①~④ (생략)</p> <p>⑤시민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·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시민옴부즈만이 정한다.</p> <p>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시민옴부즈만 조직 등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.....</p> <p>.....자</p> <p>.....자문과 고충민원해결을 위하여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집단민원 중재·조정위원회의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	<p>제7조(시민옴부즈만 조직 등)</p> <p>①~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.....</p> <p>.....자</p> <p>.....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자문위원회의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#### **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**

의안번호	제492호
의결년월일	2001. 7. 14 (제88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7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날로 다양하게 빈발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정추진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, 부천시시민옴부즈만과 덕망이 높은 사회지도층 인사들로 구성된 순수민간성격의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을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

## ■ 주요골자

-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조사에서 집단민원 중재·조정 역할을 추가신설함(안 제2조제2호)
  - 시민옴부즈만의 조직 중 자문위원회를 집단민원중재·조정위원회로 명칭변경(안 제7조제5항)

### [수정안 포함]

##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민음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호중 “채택조사”를 “채택조사 및 집단민원중재·조정”으로 한다.

제7조제5항중 “수당을”을 “일비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